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3239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323983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45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유재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수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변론 종결2022. 6. 17.

판결 선고2022. 6. 24.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457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0. 1. 20. 접수 제3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과 B 사이의 2020. 1. 20.자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B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청구는 인용하면서, 피고와 B에 대한 각 원상회복 청구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원상회복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D과 B 사이의 매매예약 취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인정사실)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가. D과 B 사이의 2020. 1. 20.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은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6면 제4항)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며, 이때 주등기의 말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구하면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20.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20. 1. 29. 다시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이상, 양수인인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이나현

판사안정현

별지